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3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김영옥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성연, 봉양순, 송경택,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1.4%로 30대(25.4%)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전체의 36%에 달함.
- 서울시 범죄 발생 지역별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서울 6,271명(전국 22.7%)으로 경기도(6,678명/24.2%) 다음으로 높음.
- 마약은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상품명 칭 또는 상호명에 사용되고 있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친화적으로 비쳐질 수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변경 권고 (안 제7조 제1항 제4호).

나. 식품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 지원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변경 권고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품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사업자 등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u>제8조</u> (생략)</p>	<p>제7조(사업)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변경 권고</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8조(비용의 지원) ①</u> 시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품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u>제9조</u> (현행 제8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비용의 지원)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대상 지원비용(Ex. 식당 간판 및 메뉴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관련부서(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결과 해당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비용소요**¹⁾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해당규정에 의한 실질적·직접적 비용소요 변화 검토]** 서울시 관련부서(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결과 서울시 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식당명을 사용하는 업체는 2025. 3월말 기준 19개(인허가 기준)로 현재 많지 않고, 자치구에서 간판 등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미고려사항]** 참고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간판 2,000천원, 메뉴판 500천원, 제품 포장재 200천원으로 남아있는 19개 업체 전부 시에서 지원하다고 가정할 시 4,75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시지원 여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 요소가 없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